

전문건설업 행정처분(시정명령)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11. 18.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공시송달 대상 업체 및 현황

업체명 (대표자)	등록업종 (등록번호)	영업소 소재지	처분내용 (처분일)	처분근거
태광건설(주) (위대환)	철근·콘크리트공사업 (경남98-10-68)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260번길 7-19 청라에이스프라자 701-1호 (청라동)	시정명령 (2024.11.18.)	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(하도급대금의 지급 등)

2. 공고기간 : 2024. 11. 18. ~ 2024. 12. 2.

3. 공고방법 :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4. 기타사항

가. 본 행정처분 사항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(등록말소 등의 공고)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고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시장 또는 온라인(<http://incheon.simpan.go.kr>)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(032-560-44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